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7,096,627	14,912,899
일반회계	444,908,084	13,347,243
특별회계	52,188,543	1,565,656
공기업특별회계	36,111,034	1,083,33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167,620	665,02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943,414	418,302
기타특별회계	16,077,509	482,325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054,821	61,645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2,881	86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300,000	9,000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271,703	68,151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8,247,000	247,41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01,104	96,033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3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불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46,51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